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안내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(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·입주권 전매를 포함)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’ 제출이 의무화 되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참고사항

항목		상세항목	세부내용	증빙자료
자기자금	금융기관 예금액	예금(적금) 등	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	예증잔액증명서 등
	주식·채권 매각대금	주식(채권)매도액	주식·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	주식거래내역서, 예금잔액증명서 등
		이에 준하는 자금	이에 준하는 자금	
	증여·상속 등	가족 등 증여·상속	가족 등으로부터 증여·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	증여·상속세 신고서, 납세증명서 등
	현금 등 기타	보유 중인 현금	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
		펀드/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	예금(적금)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	
		이에 준하는 자금	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	
	부동산 처분대금 등	타 부동산 매도액	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	부동산 매매계약서,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
		기존 보증(전세)금	기존 보증(전세)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	
		중전부동산 권리가액	재건축, 재개발 등으로 발생한 중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	
		이에 준하는 자금	부동산등의 매각(기존임대차 보증금 회수)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	
차입금 등	금융기관 대출액	주택담보대출	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(승계) 자금	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서,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
		신용대출	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	
		그 밖의 대출	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기재	
		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	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여부에 V체크, 보유란에 V체크한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 (분양권,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,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)	
	임대보증금	현 임차인 전세(보증)금 승계	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	부동산임대차계약서
		신규 임대차 계약	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	
	회사지원금·사채	법인/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	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(상환기관 등이 약정된 자금)	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
	그 밖의 차입금	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	가족/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(상환기관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)	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
조달 자금 지급 방식	계좌이체 금액	은행 등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	증빙이 가능한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	
	보증금·대출금 승계	기존 대출금· 임대차 보증금 승계	매도인의 기존 대출금·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금액	
	현금 등 기타지급	현금 등 기타자산 지급	계좌이체 또는 승계한 금액이 아닌 현금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 사유를 기재	
입주계획	본인입주	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	
	본인 외 가족입주	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(ex. 분가한 자녀가족,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)	
	임대(전월세)	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	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	
	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	입주 또는 임대 이외	재건축/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	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예시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1에 의거하여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
「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」 제출을 의무화 합니다.

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3서식] (개정 2022. 2. 28.)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rtms.molit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 계약자 본인 이름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 계약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(뒷자리 포함)	
	주소(법인소재지) 계약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	(휴대)전화번호 계약자 본인 전화번호	
① 자금 조달계획	자기 자금 (본인 돈)	② 금융기관 예금액 계약자 본인명의 예금(적금) 등 원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 당첨자 본인명의 주식, 채권 등 매도 및 이에 준하는 자금 원
		④ 증여·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/상속 받는 경우 원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현금, 펀드/보험해지, 귀금속매도, 입주 시까지 예상추가소득 등 (② ③ ④ ⑥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) 원
		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 [] 그 밖의 관계()) ④ 번 해당 시 √체크 및 관계	[] 보유 현금 [] 그 밖의 자산() ⑤ 번 해당 시 √체크 및 그 밖의 자산종류
	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당첨자 본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처분 대금 또는 보증금(전/월세 거주자) 원	⑦ 소계 자기자금 총 합계(②~⑥ 합계 금액) 원
	차입금 등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우측 대출금액 합계 (주택담보+신용+그 밖의 대출) 원	주택담보대출 원
			신용대출 원
			그 밖의 대출 원
		기존 주택 보유 여부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√체크 및 건수 기재) [] 미보유 [] 보유(건)	
		⑨ 임대보증금 전세, 월세 등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원	⑩ 회사지원금·사채 대부업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등에 주택자금 대여금 등 원
		⑪ 그 밖의 차입금 제3자 등 그 밖에 방법으로 빌리는 자금 원	⑫ 소계 차입금 등 총합계(⑧~⑪ 합계액) 원
⑪ 번 해당 시 √체크 및 관계			
⑬ 합계	⑦+⑫ 당첨된 동호수의 아파트 분양금 총액 원		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⑬ 번 항목과 동일한 금액 원	
	⑮ 계약이체 금액	⑬ 번 항목과 동일한 금액 원	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작성 금지 원	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작성 금지 원	
	지급 사유()	작성 금지	
⑱ 입주 계획	[] 본인입주 [] 본인 외 가족입주 해당 입주예정자 칸 체크 (입주 예정 시기 : 2030 년 03 월)	[] 임대 ⑨번 기재시 체크 (전·월세)	[] 그 밖의 경우 작성 금지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
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날짜기재 금지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제출인

계약자 본인 이름

(서명 또는 인)